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12/14 통권 160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부가세 과세 사업장 관리와 여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비교>

개념구분	일반적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등록	각 사업장마다 등록함	좌동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됨
적용신청	자동적용	주사업장이 신청	주사업장이 애초 신청, 중도신청
신고·납부	신고와 납부 각자 실행	신고는 각 사업장, 납부만 주사업장 합산납부	모든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모두 주사업장이 총괄수행
의미, 효과	부가가치세법 원칙대로 (사업장단위과세)	사업장별 납부(+)와 환급(-)를 상쇄하므로 자금부담완화	온라인 전자시대에 모든 업무를 중앙집중관리
사업장간 거래	내부거래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작성하고 교부함	각 사업장별로 별도세금계산서는 발행하되, 세금만 순액정산	내부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거래명세만 비치
적용	소규모 사업자, 단일 사업자	중규모 사업자 (매출과 매입기능이 다른 경우)	대규모 온라인 전자상거래회사, 물류창고회사 등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100세, 헨리 키신저의 고언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사업자들간에 거래대금의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방법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
-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주요 문의사항
-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거래 알람서비스(K-ITAS)」 활용도 제고를 지원합니다
-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 중소기업 이베스지(ESG) 지원 고도화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수단만 제공하는 통신판매수단 제공자는 중개업 면허 필요없음

(p.13)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01호 / 주간 50호

2022. 12. 14.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가세 과세 사업장 관리와 여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사업자들간에 거래대금의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방법	2
C E O 에 세 이	100세, 헨리 키신저의 고연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수출재화의 반품에 따른 매출 취소시 환율 적용 및 회계처리 문의 - 회사 사업부 매각 - 수출 클레임 관련 문의 - 임대매출 공제 건 관련 문의입니다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체크해야 할 부동산 연말정산 내용 - 연금 관련 연말정산 절차	9 10
직 장 인 Survival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대화법칙 14가지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중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 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 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법규재산-296, 2022.04.11) -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지는 사실판 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 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서면소비-960, 2022.03.22)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소...베트남·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14
마 케 팅 Tax consulting		13
세 무 정 보	-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주요 문의사항	15 19 23
회 계 정 보	- 상장사 임 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 스(K-ITAS)」 활용도 제고를 지원합니다 -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 다	30 37
경 영 정 보	-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 고도화 방안 발표	39
노 무 정 보	-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3

사업자들간에 거래대금의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방법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1.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발행 : 모든 법인과 + 2018년부터 개인(연매출 3억원 이상)
2. 발행시점 : 재화·용역이 공급(소유권이전, 장소이동 등) 되는 일자에 발행, 다음날까지 전송(거래 대금의 수금일자가 아니므로 거래즉시 발행하며, 연기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 있음)
3. 1개월간 거래 합계발행 : 당월분 거래 합하여 당월말일자 발행, 또는 매 1개월 단위 정기 발행
4. 매입자를 위한 매입세액공제 :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 10%를 거래징수함에 상응하여,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야 하므로, 쌍방간에는 합법적으로 거래하여 공제환급을 보장해주어야 함.
5. 대부분 사업자의 매출, 매입 : 매일, 매월, 매분기별로 사업자들의 매출, 매입은 꾸준하거나 일부 변동하므로, 언제나 분기별 매출 > 매입이므로, 분기별 납부세액(+)으로 계산됨이 일반적
6. 분기별 매입이 매출보다 커 부가세환급(-) 되는 경우 특히 주의(세무조사대상 될 수 있음) : 특정 분기에 원·부재료 일시·과다매입, 특정기간 매출부진, 건물·기계설비투자가 종결된 경우 등의 사유 있으면 됨.
7. 거래공급시기 : 재화인도일, 또는 상대방 이용 가능일,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 등은 조건 성취시, 장기할부는 대가 각부분 받는 약정일, 완성도 기준은 진행을 확인하여 대가 각부분 받기로 한 날(가스·전기 등 계속적 공급은 정기검침일 등), 수출은 선적일 등
8. 미발행가산세 등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2%, 확정신고일까지 지연발급 : 공급가×1%(매입자는 지연수취 : 공급가×0.5%), 미전송 : 공급가×0.5%

100세, 헨리 키신저의 고언(苦言)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미·중 패권갈등이 외교·안보·군사·경제 등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지난 9월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방부 F35 합동사업단(JPO)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지난 달 진행된 조사에서 전투기 엔진 터보머신 펌프에 쓰인 자석이 중국산 합금임을 확인했다”며 “제조사가 당국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전투기 인수를 잠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F35 스텔스는 한 대 당 우리돈 천억원이 넘는다. F35에 들어가는 부품이 30만개가 넘는데 중국산이 딱하나 들어갔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코미디에 버금한다.

지난 7월20일 뉴욕에서 블룸버그 뉴스의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나이로 100세가 된 노정치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1923년생)전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날의 지정학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다른 유럽국가간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닉슨식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70년대 미·중관계회복에 기여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정치가 ‘중국의 영속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간섭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점점 적대적인 관계가 “1차 세계대전에 필적하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인들은 중국을 ‘지대물박(地大物博)’이라고 믿고 있다. ‘땅이 넓고 산물이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중국땅 밖의 ‘식민지’가 필요치 않다. 중세이후 대항해시대를 열며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세계만방에 식민지를 만들어 수세기간 고혈(膏血)을 반겼과는 완전 다르다. 중국은 대륙을 침탈한 극소수의 몽고족이나 만주족을 중국이라는 대륙에 녹여버려 하나가 된다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의 영속성을 뚜렷이 간직한 14.5억 인구의 대국이다. 지난 8월30일(현지시간) 옛 소비에트연방(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타스, 스포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91세.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을 추진했다.

1990년 2월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통일독일에 대한 협력의 댓가로 나토(NATO)가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

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쾌히 독일통일회담에 응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1997년, 미국은 동유럽국가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나토 가입을 확정지었다. 이에 반발한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장관(재임기간 1994.2-1997.1.)은 옷을 벗었다. 지난 9월6일(현지시간) 페리 전장관(1927년생, 한국나이 96세)이 미국의 비영리단체 ‘아웃라이더’에 기고한 글은 ‘미국은 어쩌다 러시아를 잃었으며 어떻게하면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까’다.

나토확대가 관계악화 원인의 전부도 아니다. 미국과 서방측 정부들이 핵무기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세계질서에 대해 갖고 있는 핵심적 중요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적이 돼야 할 어떠한 근원적 이유도 없다. 적은 푸틴이지 러시아가 아니다. 나이가 넘치는 노 정치가들의 고언(苦言)을 깊이 받아들여야겠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2일 (금)	12월 5일 (월)	12월 6일 (화)	12월 7일 (수)	12월 8일 (목)
미	달 러 (USD)	1300.80	1300.40	1293.20	1309.00	1319.50
일	본 엔 (JPY)	961.74	966.59	945.63	955.93	967.13
영	국 파 운 드 (GBP)	1594.26	1596.89	1576.93	1588.14	1610.98
캐	나 다 달 러 (CAD)	968.29	965.19	951.48	958.90	966.45
홍	콩 달 러 (HKD)	167.22	166.96	166.50	168.38	169.35
중	국 원 (CNH)	184.52	184.30	185.82	187.81	189.02
유	로 화 (EUR)	1368.90	1369.71	1357.08	1370.20	1386.79
호	주 달 러 (AUD)	885.84	883.10	866.31	875.92	887.50
싱	가 폴 달 러 (SGD)	960.50	961.66	953.30	963.67	973.4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5.30	296.35	295.99	297.80	300.06

수출재화의 반품에 따른 매출 취소시 환율 적용 및 회계처리 문의

Q 당사에서 미국에 있는 고객사에게 제품 매출 후 하자가 발견되어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제품 100개, 단가 100원
- * 선적일 : 2021.10.31 환율 \$1,100.00
- * 외화평가 : 2021.12.31 환율 \$1,150.00
- * 반품일 : 2022.07.31 환율 \$1,200.00

※반품시 회계처리
 (차변)외상매출금 -11,500,000 (대변)매출 -11,000,000 , 외화평가이익 -500,000

* 수출재화의 반품시 최초 선적일 환율로 매출취소를 진행하고
 21년 12월 31일 환율로 외화평가금액을 환원하는 회계처리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매출후 하자가 발생되어 최초의 매출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최초 선적시점에 반영한 매출을 취소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회사 사업부 매각

Q A 법인의 적자 사업부를 B 법인에 매각하려함

- 매각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인원과 부채 및 자산(비품(컴퓨터, 책걸상 등), 관련물품(홍보물품, 재고자산 등))이 일괄 승계됨.

질문 1 : 위의 매각 대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사가 월매출의 5배내지 10배 등으로 자체산정시 문제가 될지요?
 질문 2 : 매각 대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질문 3 : 만일 A사의 대주주가 B사와 특수관계일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지요?

A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무조건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도 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고, 부가세 10% 없습니다.

수출 클레임 관련 문의

- Q** 당사는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합니다. 수출분 클레임에 대하여 매월 확정처리하고 반제처리를 연1회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금회수가 지연될 경우 대손충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대금지급이 1년안에 정리되지 않을 시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클레임 회수일정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 A** 매입채무를 1년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내 세법상의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즉, 국내세법에서는 매입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대금 정리는 거래 당사자간 결정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

임대매출 공제 건 관련 문의입니다

- Q** 당사는 임대매출 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임차 회사인 A회사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당사가 아닌 임차 회사 A로 되어 있습니다. 위 건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공제시 금액관련하여 문의사항입니다. 공급가액 : 800,000원 부가세액 : 80,000원 일 경우 당사는 공제관련 공급가와 부가세는 얼마로 공제해야 하는지요?
- A**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공급받는 자가 귀사가 아닌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귀사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귀사가 부담하는 귀사의 비용인데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공급자에게 귀사를 공급받는자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게 되므로,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회계에서와는 다르게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기할부판매 등의 경우에는 특례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세무상 장기할부판매의 범위

장기할부판매란 자산을 인도한 후 그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방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자는 즉시 자산을 인도하지만 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금 완불시까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게 되는 거래방식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양도)방식만을 장기할부판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기만 하면 월부로 하든 연부로 하든 그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 ② 할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할부기간은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장기할부판매의 손익 인식기준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한 사업연도에 매출이익이 전액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현재가치 인도기준이나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명목가치인도기준 원칙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채권을 명목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에,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재가치평가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수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③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수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양도한 경우로서 판매·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장기할부매출의 손익귀속 시기

구분	법인세법	기업회계
장기할부판매	① 원칙 : 인도기준 ② 특례 -이자상당액의 현재가치 수용 -회수기일 도래기준 수용	인도기준 - 이자상당액의 현재가치평가 적용 - 회수기일 도래기준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가능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체크해야 할 부동산 연말정산 내용

<p>청약통장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연도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0만원
<p>월세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대상자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동일(부모 등 제외) - 전용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수준 따라 공제한도(750만원)내에서 월세액의 12-15%
<p>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입자(세대주), 전용 85㎡이하 주택 임차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
<p>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9년 이후 5억원 이하) - 주택소유자와 차입자 명의를 같아야 함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300만~1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기간따라 차등)



연금 관련 연말정산 절차

	공제 방식	주요 내용
국민연금	소득공제	<p>종합소득이 있다면 그해 납부한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 소득공제
옛 개인연금	소득공제	<p>당해연도 저축 금액의 40%(72만원 한도)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판매 중단(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가능)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간 저축 한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p>50세 이상이면 200만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추가 공제 불가
		<p>ISA 만기 상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연금계좌 이체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체 금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내용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5500만~ 1억2000만원 이하 (4000만~1억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세액공제율		16.5%	13.2%	
세액 공제한도	만 50세 미만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대화법칙 14가지

실천하기 7가지

01.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한다.
02. 사소한 말에 정성을 기울인다.
03. 장점부터 말한다.
04. 승자처럼 말한다.
05. 끼어들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한다.
06. 근사한 자기소개 문장을 만들어 둔다.
07. 먼저 말문을 연다.

하면 안되는 7가지

08. 테스트하는 말을 삼간다.
09. 공감 표시를 생략하지 않는다.
10.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11. 자기만의 원칙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12. 알고 있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는다.
13.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다.
14.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다.

최신 판례 예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부동산-5853, 2022.05.25

질 의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C)을 취득한 경우, 양도한 주택(B)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소득령 155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4, 2008.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4, 2008.2.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20>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법규재산-5317, 2022.04.08

질 의

-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 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20>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

서면상속증여-7722, 2022.03.23

질 의

- 甲은 부로부터 '15.7.23. 영농농지(A)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고함(증여재산가액 5억원, 증여세액 8천만원 전액감면)
 - 만 5년 후인 '20.11.24. 부로부터 재차 영농농지(B)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고(증여재산가액 5억원, 증여세액 9천만원)
 - A, B 농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기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질의

- 위와 같이 영농농지(B)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고 시, 5

- 년 전에 전액 감면받은 영농농지(A)와 합산 여부
(갑설) 합산 배제하여야 한다
- 영농농지(A) 증여 후 5년이 경과하여 새로이 감면한
도액을 적용하게 되므로 합산 배제되어야 함
(을설) 합산하여야 한다
- 감면한도액(1억원)과 별도로 동일인으로서 10년 이내
증여분은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수단만 제공하는 통신판매수단 제공자는 중개업 면허 필요없음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서면소비-960, 2022.03.22

질 의

- 민원인은 온라인 플랫폼 ○○닷컴을 통해 전자제품의 판매 및 전자제품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로 최근 ○○닷컴 내 "○○○ 식품관"을 통해 (주)○○○ 등 식품회사와 연계하여 밀키트 등 식품류의 거래도 중개하고 있음
- 민원인은 향후 (주)○○○○○와 제휴하여 ○○닷컴 내에 "와인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주)○○○○○가 ○○닷컴을 통해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주류의 실물은 (주)○○○○○의 오프라인 매장인 와인○○○에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가는 형태임

질의

- 민원인이 자신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류거래를 중개할 경우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면허가 불필요하다면 '통신판매 수단 제공'의 범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통신판매 수단에 주류의 정보 및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 법령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 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 수단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타인 간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와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매개수단만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소... 베트남·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7일 양 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해외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정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쩡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이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지난 5일 서울에서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국이며, 7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김 국세청장은 카오 아이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해결하거나, 사전적으로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협력장치를 더 활발히 가동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역시 재수교 25주년을 맞이했으며,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 국간 교역액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국세청장은 쩡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발효에 따른 세정협력 절차의 실질적 이행과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양국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캄보디아 국세청을 대상으로 전자 세정 교육을 실시하여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캄보디아 국세청은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무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세청, 수출입 빅데이터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찾아낸다"

관세청이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왕중왕전'을 열고 수출입 빅데이터를 통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본격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2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들은 지난해 2월 관세청이 구축한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성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데이터에 기반해 급증하는 해외지구 및 불법 마약밀수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내·외부의 관세·무역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언제든지 직원들이 이를 분석하여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통 2년차인 올해에는 방대한 데이터 양과 높은 분석 난이도 등으로 과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플랫폼상의 분석모델 등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외환거래 및 우범 화물 적발 등 이번 수상사례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관세청에는 하루 평균 약 260만톤의 수출입화물과 1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이 국경을 통과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 이번 경진대회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세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공공의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기획재정부, 2022-12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 ~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주요내용과 재산세 개편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재산세 세부 내용은 별도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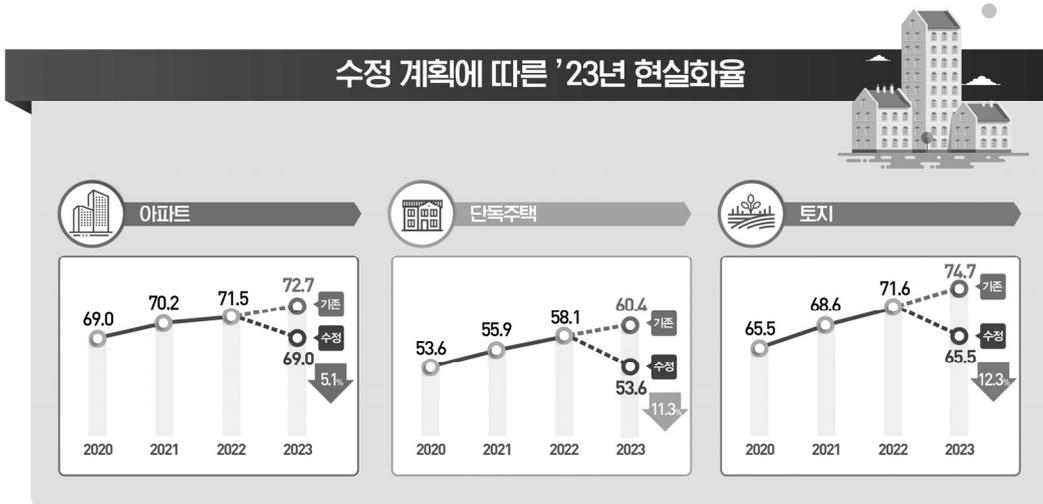
2.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 수정 계획에 따른 '23년 현실화율 】

	'22년 현실화율	기존 '23년 현실화율	수정 '23년 현실화율
아파트	71.5%	72.7%	69.0%
단독주택	58.1%	60.4%	53.6%
토지	71.6%	74.7%	65.5%

-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 유형별로 산정한 평균치이며, 신규주택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

-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과도한 보유 부담)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 하면서, 지난 2년간('21년, '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 현실화 계획 시행 전·후 공시가격 변동률 】

구분	시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시행 전	'11~'20년 연평균	3.02%	4.39%	4.66%
시행 후	'21년	19.05%	6.80%	10.35%
	'22년	17.20%	7.34%	10.17%

* 현실화를 제고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은 공동주택 연간 최대 4.3% 수준('21년 시세 9~15억)

- ② (시세 역전 방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 ③ (균형성 개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를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를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를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23년 공시가격	=	'22년 말 시세	x	'23년 현실화율('20년 수준)
-----------	---	-----------	---	--------------------

□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3.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 재산세 >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

< 종합부동산세 >

-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중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개선
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1주택자) 11억원 • (일반) 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1주택자) 12억원 • (일반) 9억원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택 이하) 0.6% ~ 3.0% • (3주택 이상) 1.2% ~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 2.7%
세부담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택 이하 150%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하게 150%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2. 11

- (기획점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점검내용) 금번 점검은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증 결과 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②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공정세정과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께서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하여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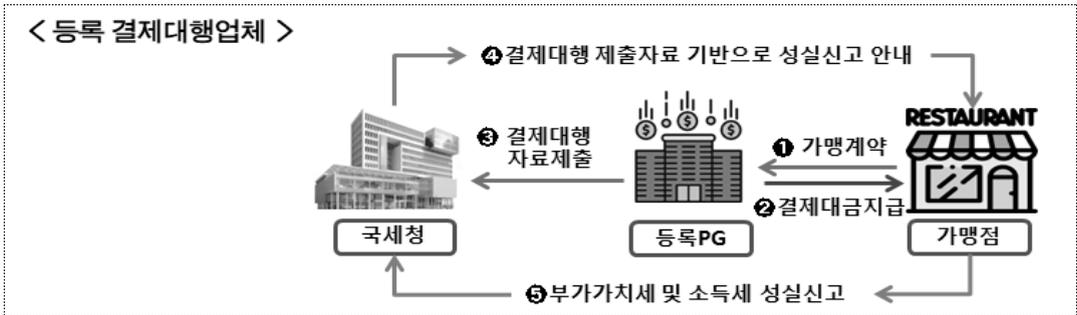
1 기획점검 배경

-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결제대행업체1)의 결제대행 서비스2)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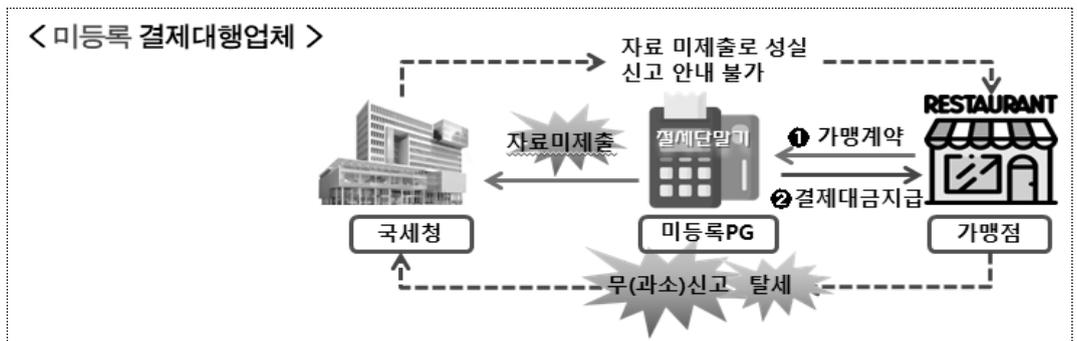
니다.

- 1) 결제 대행(PG)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
- 2)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요소를 모두 갖춰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 온·오프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 (금융위 법령해석, '19.4.24.)

- 금융감독원에 등록1)한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① 매출결제의뢰를 받으면 ②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③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2)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④ 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성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전자금융업 등록 후 영업
 - 2)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결제 대행시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의무



- 그러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

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높은 수수료 (매출금액의 7~8%)를 편취하고 있습니다.

- 일부 자영업자도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예시>

'사장님들의 세금을 절세단말기로 줄어드립니다!'

- 결제시 카드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 수수료는 높지만 각종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줄어드립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입니다.
- 최근 절세의 목적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 세무상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2 기획점검 내용

-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 및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43개 ('20.1기~'21.2기)를 추출하였습니다.
 - 이들에 대해 결제대행자료 미(과소)제출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 검증한 결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하여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 만일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업무계획 및 사업자 유의사항

-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엄단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게시된 결제 대행업체 등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결제대행을 의뢰하는 가맹점 등에 게 관련 정보도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신종업종 세무안내 > 참고자료실

□ 끝으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어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결제대행자료 제출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7조 (결제대행자료의 제출)

- ① 결제대행업자는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결제대행건수·결제수단별 결제대행금액·결제연월 등 결제대행내역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하나의 거래과정에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2 이상인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대행업자만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급결제 의뢰자에게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제의뢰자의 신원을 아는 결제대행업자가 제출한다.

●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6조 (자료 제출 기한 등)

- ①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는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산매체제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출한 자료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시정을 요구받는 경우 오류를 발견하거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주요 문의사항

- 국세청, 2022. 12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¹⁾, 고정자산매각액²⁾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text{주업종}^{1)}\text{의 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2)}}{\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1)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2)기준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소득세과-729, 2019.5.23.)

3.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5.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7.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함

8.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9.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17년 귀속까지는 100만원)로 공제하는 것임

10.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 '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함

1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 조특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15억 (2020.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이상 *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② 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③ 음식업(6.30. 폐업) (7억) 도매업(10.1. 개업) (5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음식환산 2.5억(5억×7.5/15)
④ 제조업 7억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⑤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 15억) 이상 * 도매 13억+도매환산 2억(1억×15/7.5)
⑥ 음식점 7억, 부동산임대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음식환산 1.5억(1억×7.5/5)
⑦ A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 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제조 7.5억) 이상 * 제조 5.5억+제조환산 2억(4억×7.5/15)
⑧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임대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 15억) 이상 * 도매 10억+도매환산 6억(2억×15/5)]



■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손익분배비율 50%]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억) 이상 *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 합산)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③ 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5억	공동 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5억 * 임대 2억+ 임대환산 0.5억(1.5억×5/15)
④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병]	A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미만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⑤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판단

✓ 관련 최신 예규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소득세과-1662, 2016.11.04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함

4. 소득, 소득세과-1596,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5. 소득, 법령해석과-1083,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18귀속부터)

6. 서면소득 2015-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7.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107, 2015.06.30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8. 서면소득 2015-176, 2015.05.12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9. 소득, 서면법규과-611, 2013.05.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1. 징세과-1037, 2012.09.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2. 소득세과-463, 2012.06.0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8년 귀속부터는 120만원

13. 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 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4. 소득세과-364, 2012.04.30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5. 소득세과-348, 2012.04.25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6. 소득세과-335, 2012.04.21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 소득세과-182, 2012.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 제고를 지원합니다

- 금융감독원, 2022. 11

<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 ◇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현재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K-ITAS를 활용하는 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 ('22.3월 첫 공동조사 실시)

- ◇ 동 협의회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11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11월 신규착수 10건)이 진행중입니다.
 - 11월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5명, 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회의 개요

- 1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 한국거래소 · 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 · 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심협 개요 >

◇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시 수시 개최)

II 조심협 주요 논의 내용

1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방안 (K-ITAS 활용도 제고)

< 추진배경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제재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특히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 거래소 →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17) 51.1% → (18) 69.5% → (19) 74.8% → (20) 62.6% → (21) 69.0%

⇒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 (현행)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 · 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도록 표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상장협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코스닥협회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 이에 따라 유가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소속 협회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매매내역 보고와 관련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 (문제점) 그러나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 (개선) 금번 조심협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K-ITAS,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12월중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는,
 -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 〉

- ◇ (개요)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해당 상장사에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 ('18.7월 서비스 개시)
 - > 상장사는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예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에 활용
- ◇ (이용방법) 상장사가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신청
 - ※ 거래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또는 전화 신청(02-3774-4375)
- ◇ (이용현황) 전체 상장사의 12.5% 이용 (307개사/2,451개사, '22.11월말 기준)

〈 기대효과 〉

- 향후 상장사가 협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면,
 -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 등 매매내역에 대한 별도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장사) K-ITAS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되고,
 -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의 규제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6개월 이내 매수(매도) 후 매도(매수)한 경우 차익 반환 (자본시장법 §172)
- ** 상장사 임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증선위·거래소에 보고 (자본시장법 §173)

〈 향후계획 〉

- 금융위·거래소·상장협·코스닥 협회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안내자료 및 Q&A 배포, 신규상장일 임직원·공시책임자 대상으로 가입 독려 등

2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적극 추진

- 조심협에서는 금년 3월 ○○○○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하여 실시한 첫 공동조사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조사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간 적극 협력하는 한편,
 -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공동조사 개요 〉

- ◇ (개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
- ◇ (실시 사례) '22.3월, 금융위·금감원은 ○○○○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금감원의 공동조사 요청으로 첫 공동조사에 착수
 - > 약 4개월간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내용을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 -Track)로 '22.7월 검찰에 통보
 - *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

3 심리·조사 현황

- 조심협에서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 및 금융위·금감원 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형사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구 분		'22.10월	'22.11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172건	147건
	투자경고	11건	13건
	투자위험	3건	1건
	소 계	186건	161건
예방조치 (서면·유선경고, 수탁거부 등)		398건	417건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13개 테마	13개 테마



2. 심리 현황

	'22.10월	'22.11월
신규착수	16건	14건
종결	15건	15건
진행중	-	15건

3. 조사·조치 현황

		'22.10월	'22.11월
조 사	진행중	-	160건
	신규 착수	14건	10건
조 치	종결	10건	12건
	고발	-	1명
	통보	9명, 1개사	8명, 10개사
	과징금	1명, 2개사	5명, 7개사
	과태료·주의·경고	-	16개사
	합계	10명, 3개사	14명, 33개사

참 고 -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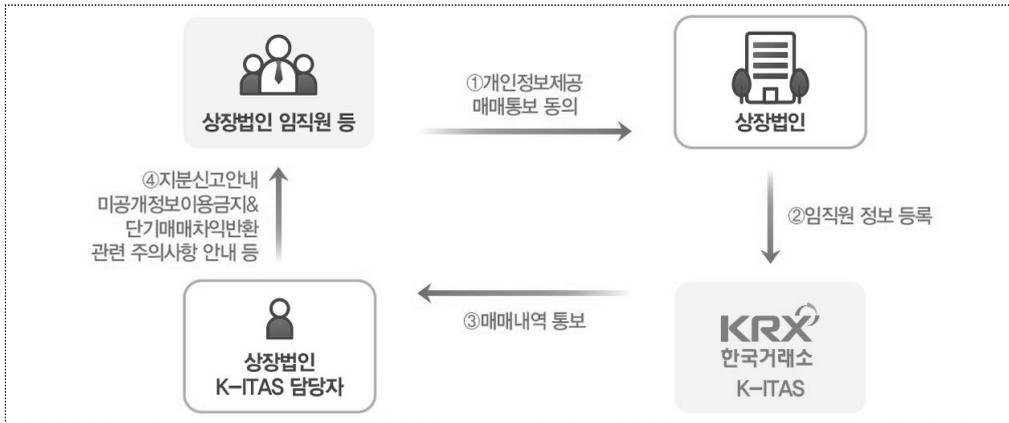
1. 개요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 (개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주식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해당 매매 내역을 회사에 통보해 주는 서비스 (' 18.7월 개시)
- (활용) 상장사는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예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에 활용

2. 서비스 운영 내용

- (등록대상)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공시책임자·담당자, 공시대리인 등
- (신청 대상 종목) 당해 법인 및 계열사의 상장주식
- (운영방법)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
 - 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

자로 통보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 조회 후 유의사항 안내 등 조치



<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신청 방법 안내 >

- ▶ 인터넷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 ▶ 전 화 : 02-3774-4375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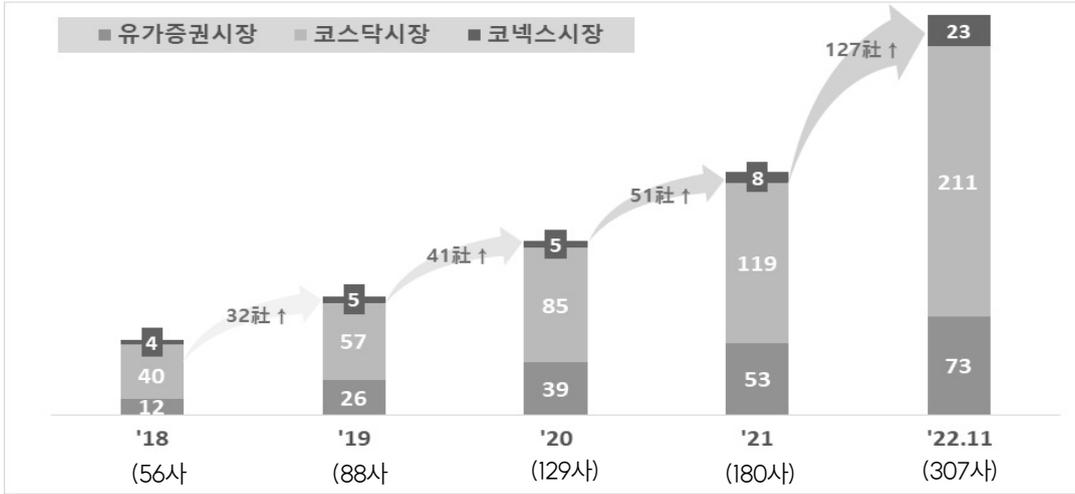
□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¹⁾, 단기매매차익거래²⁾ 및 임원 소유상황 보고³⁾ 위반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

- 1) (예시) 임직원의 매매 발생 시 중요정보를 사전 점검하여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을 조기 차단 함으로써 내부자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 2) (예시) 매수한 임직원에게 6개월 이내 매도주문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거래 발생 예방
- 3) (예시) 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누락이 없도록 매매사실 고지

4. 가입현황

- '22.11월 기준, 총 307사 가입, 전체 가입률*은 약 12.5%* (307/2,451사)
 - * 전체 상장사 (주권 및 외국주권 상장 기준, 스펙은 제외) 대비 K-ITAS 가입사 비율
 -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 등의 영향으로 가입률이 매년 상승

〈 K-ITAS 가입현황 〉



□ K-ITAS에 가입한 시가총액 상위 상장법인은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HMM 등의 순임 (기업명 공개 동의 기업 限)

〈 K-ITAS 가입법인 중 시가총액 상위 10사 〉

순위	회사명 (시장)	순위	회사명 (시장)
1	카카오 (유가)	6	기업은행 (유가)
2	포스코케미칼 (유가)	7	엘앤에프 (코스닥)
3	카카오뱅크 (유가)	8	카카오페이 (유가)
4	크래프톤 (유가)	9	넷마블 (유가)
5	HMM (유가)	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가)

* K-ITAS 가입사 중 '22.11.30 기준 시가총액순 (기업명 공개 동의 기업 限)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 금융감독원, 2022. 12

I 개요

-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2.4.18)을 의결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II 개정안 주요내용

❖ 내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게도 적용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고, 인증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됩니다.

- (현행)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23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 시기〉

연도	19년	20년	22년	23년
	기 도입			도입 예정
자산	2조원 (190개, 7.8%)	0.5조원 (296개, 12.2%)	0.1조원 (1,028개, 42.4%)	전체 (912개, 37.6%)

- 그러나,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 미국도 ①시총 75백만 달러 미만 기업과 ②시총 75백만~700백만 달러 미만&매출액 1억



달러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중

- (개정)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미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 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 '검토'와 '감사'의 차이 :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
- (기대효과) 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 ①내부회계 고도화비용(회사당 46백만원, 1회성)과 ②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회사당 40~46백만원, 매년) 절감이 예상됩니다.



향후 일정

-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금년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 ①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의무 강화(공시서식 상세화), ②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성과를 회계감리제재에 반영 → 외감규정 개정안 마련 및 규정변경예고(금년 중)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 고도화 방안」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 2022. 11

- 민간 협업 방식의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 확대를 위해 농협, 하나은행 등 시중 5대 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이에스지(ESG) 경영혁신 우수기업 6개사 포상
-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점검표(체크리스트) 2.0 마련 및 자가진단 제공, 온라인 종합체제(플랫폼) 구축 등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정책 고도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월 30일 '2022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을 개최하고, 민간 협력 방식의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개최된 '2022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은 글로벌 이에스지(ESG) 규제 시행에 대비해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정책을 고도화하고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사례를 포상하며,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 2022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1. 30(수) 14:00, 포시즌호텔서울(종로구) 3층 그랜드볼룸
- 주최 및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참석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준학 엔에이치(NH)농협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정문철 국민은행 전무이사,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기업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우수 이에스지(ESG) 혁신사례 포상 (6개사), 금융기관 업무협약,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고도화방안」 발표 등

❶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확산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4월, 케이비(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이에스지(ESG) 중소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및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해왔다.



* 금리우대 (0.4%) 및 이에스지(ESG) 전용 금융상품 개발

이러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2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시중 5대 은행(농협, 하나, 신한, 우리, 국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 체결로 기관 간 이에스지(ESG) 지원사업 연계, 이에스지(ESG) 관련 동향 및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업무협약에 따른 상세한 금융 유인책(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은 5대 은행이 모두 참여 중인 '이에스지(ESG) 민관협의회*'를 통해 후속 논의·실행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중 5대 은행, 기업 등 29개 기관 참여 ('21.11~)

② 이에스지(ESG) 경영혁신 우수사례 포상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스지(ESG) 민관협의회와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실천기업 발굴을 위한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혁신사례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E)·에스(S)·지(G)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 총 64개 기업이 최종 신청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 평가, 국민참여단* 선호조사 등 절차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에스지(ESG) 실천 사례의 시의적절성, 목표 달성 노력 및 지속성, 이에스지(ESG) 발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대외 소통경로(채널)

대표적으로 (주)한영특수강은 폐기물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온실가스 탄소배출량을 줄인 점이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현진제업(주)은 노동·인권·환경 등 전(全)분야 이에스지(ESG) 관리시스템 도입 등 자발적인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해 국민참여단의 가장 많은 선호를 얻은 이에스지(ESG) 스타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포상을 받게 된 6개 기업을 포함해 1차 평가 통과 20개 기업은 오는 12월 발간 예정인 '2022 이에스지(ESG) 우수 사례집'에 이에스지(ESG) 우수 실천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③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 고도화방안」 발표

독일 공급망 실사법* 등 글로벌 이에스지(ESG)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이에스지(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요구받을 것이 예상된다.

* 독일에 본사지사영업소 등을 두고 있으며, 해외직원 포함 3,0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① 공급망 실사 보고서 작성, ② 대외공시 의무화 등 제도화 ('23년 실시 예정)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한 인식 및 준비 수준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이에스지(ESG)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형 이에스지(ESG)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수립하고 케이-닥터(K-doctor) 시스템으로 자가진단 서비

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6,000개 중소기업이 자가진단에 참여했으며, 이 외에도 이에스지(ESG)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설명회,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이번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 고도화 방안」은 그간의 인식개선 중심 지원정책에 더해 이에스지(ESG) 경영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행 중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심화된 이에스지(ESG) 지침(가이드라인) 제공, 온라인 종합체제(플랫폼) 구축, 기업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인식 고도화>

우선, 중소기업형 이에스지(ESG)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확대하고 세분화*한 '점검표(체크리스트) 2.0'을 지원한다.

- * (업종) 제조업(고탄소/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물류운송업, 정보처리업(수출)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독일, 인도, 러시아, 홍콩(대기업) 삼성, 에스케이(SK), 엘지(LG)전자, 엘지(LG)화학,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화, 현대건설, 씨제이(CJ), 네이버, 쿠팡

그간 중소기업형 이에스지(ESG) 점검표(체크리스트)는 공통지표(23개 항목)만으로 자가진단을 진행했다면, 이번 점검표(체크리스트) 2.0은 업종, 수출여부, 협력 대기업 등의 지표까지 포함돼 심화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검표(체크리스트) 2.0 서비스는 현재 준비 중으로 '23.1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단기업 중 이에스지(ESG) 경영 전환이 시급한 기업을 선별해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한 심층진단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 이에스지(ESG) 교육도 확대*한다.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사업에 이에스지(ESG) 이러닝 콘텐츠 제작 확대 및 온라인 무료제공 예정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기반(인프라) 고도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에스지(ESG) 민관협의회와 국내외 이에스지(ESG) 규제 정보와 예상 영향, 정부 및 주요기관의 이에스지(ESG) 지원사업, 이에스지(ESG)·탄소중립 진단시스템 등을 한데 모은 '이에스지(ESG)·탄소중립 온라인 종합체제(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에스지(ESG)·탄소중립 온라인 종합체제(플랫폼)은 그간 분산되어 있던 이에스지(ESG) 관련 정책을 종합해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의 지휘본부(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금융계학계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에스지(ESG) 민관협의회'는 참여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협력 과제를 추가로 발굴한다.

아울러, 이에스지(ESG) 전용기금(펀드)('22.12월, 200억원 결성 예정)과 이에스지(ESG) 사



업 전환 우선 승인, 정부지원사업 우대(일자리 평가 가점) 및 우수기업 포상 등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이에스지(ESG) 경영 참여를 촉진한다.

<기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수출중소기업, 대기업 협력사, 고탄소 업종 영위기업 등 이에스지(ESG) 규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해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시 부담을 경감 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에스지(ESG) 분야 관련 수출마케팅과 해외규격인증획득시 비 이에스지(ESG) 분야에 비해 지원규모 등을 우대한다.

이에 발맞춰 작년 11월 발간한 이에스지(ESG) 경영 안내서 이해편·해결책(솔루션)편에 이어 '이에스지(ESG) 경영안내서 : 업종·수출편'을 올해 12월 발간할 예정으로, 수출국가별 상이한 이에스지(ESG) 기준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대중견·공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혁신동반관계(파트너십) 지원,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22. 0.5 → '23. 3점) 등을 지원하고, 고탄소 업종 영위 기업에는 자금, 기술개발(R&D), 공정전환, 규제특구 실증 등을 종합지원*한다.

* (자금, '23) 넷 제로(Net Zero) 직접융자 450억원, 이차보전 800억원

(기술개발(R&D), '23) 탄소중립 선도모형(모델), 넷 제로(Net Zero) 기술혁신 등 총 584억원

(공정개선, '23) 탄소중립 전환지원 및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84억원 등

(규제특구) 현(現) 수소 관련 5개, 이동수단(모빌리티) 8개, 저탄소·자원화 5개 등 총 18개

이날 이영 장관은 축사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한 조(원팀)로 대응하면 이에스지(ESG) 경영은 중소기업에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개최사에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마련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에스지(ESG) 민관협의회와 다양한 협업모형(모델)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겠다” 고 언급했다.

참고1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 개요

1. 추진배경

- 글로벌 ESG 규제 시행에 대비해 ESG 지원정책을 고도화하고, 우수기업 포상 및 민관 협업

방식의 ESG 경영 도입 촉진

2.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2.11.30(수), 14:10~16:20, 포시즌스호텔서울 (3층)
- 참석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앙회 상근부회장, NH농협은행장,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하나은행 부행장, KB국민은행 전무이사, ESG 경영 우수기업, ESG 민관협의회 참여기관(29개) 관계자 등 약 100명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행사내용 : 금융기관 업무협약,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혁신사례 포상 (6개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고도화방안」 발표 등

참고 2

이에스지(ESG) 혁신사례 포상기업 (6개사) 개요

연번	기업명	주요특징
1	(주)한영특수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외부심사단 평가 고득점 기업] (공적) 폐열회수 장치, 에너지 절감형 제어 장치 등 탄소저감 시설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획기적 감축
2	현진제업(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국민참여단 선호도 우수 기업] (공적) 스타벅스, 맥도날드 글로벌 고객사 공급망 대응 등으로 노동, 인권, 환경 등 전분야 관리 시스템 도입
3	(주)프로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공적) 생분해수지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개발로 국내 생분해 포장제품 시장형성에 기여
4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공적) 취약 농가의 생산·가공·유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저탄소농법 재배, 친환경 용기 포장 등 탄소저감 실현
5	(주)셀코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표창 (공적) 친환경 표면처리 제품 생산기술로 녹색기술 인증 및 고용 창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이에스지(ESG) 경영 확립 기여
6	와이피피(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표창 (공적)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SK이노베이션 공급망 실사 이에스지(ESG) 우수기업 인증 취득 등



참고 3

ESG 혁신사례 우수기업 (20개사) 선발 현황

□ 이에스지(ESG) 혁신분야 (10개 기업)

연번	업체명 (가나다순)	공모주제
1	정우플로우(주)	고탄성 및 고기능성을 갖는 친환경 차열방수 복합 도료
2	(주)그린다	음식물 폐기물(튀김류) 리사이클로 순환경제체제 구축
3	(주)리맨	온실가스 저감 및 건축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사업장 구축
4	(주)서원테크	폐 PET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제품 제조공정 에너지 절감
5	(주)셀코스	무오염 청정화 독자기술을 활용한 부품소재 친환경화
6	(주)프로팩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양산으로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기여
7	(주)한영특수강	폐기물(폐수오니) 자원 순환을 통한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탄소배출량 감소
8	커스텀텍	플라스틱 쓰레기(폐 아이스팩)을 활용한 순환경제구축
9	코끼리별꽃	폐자원 문제를 지역주민, 기관과 함께 협업해 해결하는 혁신사례
10	한국소방안전협동조합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자발적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사례

□ 이에스지(ESG) 실현분야 (10개 기업)

연번	업체명 (가나다순)	공모주제
1	과일드림(주)	Green Food 저탄소 과일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과 혁신(S)
2	와이피피(주)	공급망 실사 등 대외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한 이에스지(ESG) 선도사례
3	(주)매직박스	사회공헌 활동 참여
4	(주)본네이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과의 상생BM구축
5	(주)선미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사례(사회책임 혁신)
6	(주)에스엠플래닛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솔루션 개발 및 보급
7	(주)파미노젠	혁신신약개발로 보편적인 건강한 삶의 보장을 실현하는 파미노젠의 이에스지(ESG) 경영
8	창의융합과학(주)	4차 산업기술 융합 AI 스마트 물, 환경 코딩교육 키트 개발을 통한 청소년의 탄소 중립 실천의 미래인재 양성 사회공헌 활동
9	포천딸기힐링팜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산업 분야의 탄소저감 아이템 개발 및 에코 업사이클링 시스템 실현
10	현진제업(주)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사례

참고 4

중소기업 ESG 확산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주요내용

□ 추진배경

- ESG 경영 도입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실질적 유인책(인센티브)이 필요
- 기존에 KB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22.4)으로 자가진단 참여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었으며, 이를 시중 5대 은행으로 확대
 - * 자가진단 참여기업 중 중진공 추천기업에 금리우대(0.4%) 및 ESG 전용 금융상품 개발
 - ↳ 지원실적 : 자가진단 4개 기업에 40억원 대출 및 금리우대(~'22.11)

□ 중진공 - 시중 5대 은행 간 업무협약 주요내용

- (금융 인센티브)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별 ESG 전용 금융상품 개발 및 금리·한도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 은행별 우대금리, 지원조건, 상품출시 시기 등은 상이
- (DB 등 정보공유)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참여기업 DB* 및 ESG 금융지원 성과실적,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동향 등 공유
 - *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 시스템 1.6만개(~'22.10)
- (ESG 지원협력) 기관별 ESG 지원사업 및 성과공유뿐 아니라, 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하고, ESG 선도 우수기업 및 사례 공유
- (인력양성)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 이에스지(ESG) 교육 콘텐츠* 공유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홍보 등 협력
 - * 이에스지(ESG) 경영안내서, 이에스지(ESG) 이러닝, 연수원 프로그램 등

□ 향후계획

- ESG 민관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ESG 금융지원 방안 지속 협의 및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 * 시중 5대 은행은 이에스지(ESG) 민관협의회에 既참여('22.9~)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2022-11

정부는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2.12.11.)

☞ 고용보험기획과 소관

<1>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 2022. 6. 10. 개정 「고용보험법」(’22.12.11. 시행 예정)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유사 지원사업 사례 등 고려(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 고용촉진장려금 등 사업 개편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 지원금액의 상한: 정액(60만원)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제외대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를 고용한 경우

이에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과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②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완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운영비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으나, 이직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에 일시 미달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낮아지게 되어, 현장에서는 정원상 여유가 있음에도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의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 여러 사업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주단체”로서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수가 50% 이상이고,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 이상인 경우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하는 경우도 지원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예시 >

▲ 45~49%: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액의 5% 감액 지급

▲ 40~44%: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액의 10% 감액 지급

③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①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②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동시에 이직일 전 12개월의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달이 5개월 이상 있는 경우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전년 대비 소득감소가 있어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개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2.12.11.)

☞ 외국인력담당관 소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2.6.10. 공포, ' 22.12.11.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지정기준을 ①비영리법인·단체, ②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③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으로 규정하였다.

* 관련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또한, 업무의 적정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취소 등 사유로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입국 후 장관이 지정한 취업교육기관(중기중앙회, 노사발전재단 등 5곳)에서 2박 3일간 관계법령,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교육을 수료해야 함